

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078호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「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10일

산업통상부장관

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전문평가기관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
2.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선정평가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
4. 신청인의 선정요청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평가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전문평가기관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2조)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, “2021년 9월 17일”을 “2026년 7월 10일”로, “9월 16일”을 “7월 9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) ①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		제3조(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) ①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		
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.		-----.		
단,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.		②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		
제4조(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) 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(이하 “신청인“이라 한다)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에게 [별지 제1호 서식]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서(이하 “선정요청서“라 한다)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하여야		-----.		
		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		
		-----.		
		제4조(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) ① -----		

		----- 산		
		<u>업통상부장관</u> -----		

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5조(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,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[별지 제2호 서식]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(이하 “평가기준“이라 한다)과 [별지 제3호 서식]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(이하 “선정평가표“라 한다)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.

---.

②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③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) 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,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(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)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.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.

제6조(평가단의 구성 등) ① 산업

② -----

-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-----.

③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-----.

⑤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⑥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제6조(평가단의 구성 등) ① 산업

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.

② 평가단의 위원은 산업·외국인투자·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통상부장관-----

②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 산업통상부 -----

제8조(위원의 해촉) 산업통상부장관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전문평가기관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

	<u>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</u> <u>2.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3. 선정평가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4. 신청인의 선정요청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평가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1항의 전문평가기관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.</u>
<u>제9조 ~ 제11조</u> (생략)	<u>제10조 ~ 제12조</u>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<u>제12조</u> (재검토기한) 이 고시에 대	<u>제13조</u> (재검토기한) -----

하여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</u> <u>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<u>2021</u> <u>년 9월 17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9월 1</u> <u>6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.	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<u>2026</u> <u>년 7월 10일</u>----- ----- <u>7월 9</u> <u>일</u>----- ----- -----.
--	--